

25. 선급금·선수금

☐ 선급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8,054,2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3.6.25. 선고 93다15991 판결)

☐ 선급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계약상 확보해야 할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와 민법 제485조의 적용 여부
민법 제485조는 보증인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말미암아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확보된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시킨 경우뿐 아니라 계약상 확보해야 할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1985.12.11. 85가합1174 판결)

☐ 선수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9,000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20○○. 4. 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해제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21665 판결)

㉔ 선수금등 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① 원고 제일건설 주식회사에게 7,935,970,000원 및 위 돈 중 1,700,56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6.부터, 1,700,56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3.부터, 2,267,42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3.부터, 2,267,42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제이산업 주식회사에게 3,125,925,000원 및 위 돈 중 1,339,682,34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893,121,330원에 대하여는 2015. 3. 15.부터, 893,121,330원에 대하여는 2015. 6.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제삼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3,125,925,000원 및 위 돈 중 1,339,682,33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893,121,340원에 대하여는 2015. 3. 15.부터, 893,121,330원에 대하여는 2015. 6.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원고 제사건설 주식회사에게 3,125,925,000원 및 위 돈 중 1,339,682,33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893,121,330원에 대하여는 2015. 3. 15.부터, 893,121,340원에 대하여는 2015. 6.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인 고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조건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일방적으로 형성하고, 고객에게는 약관 내용을 수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지의 일방적 선택만을 강요하여 개별조항에 대한 교섭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고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불합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작성·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불공정한 내용으로 약관이 형성되었을 경우 이를 규제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법 제1조), 비록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마련한 것이어서 외견상으로는 위 법 제2조 소정의 약관의 형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쌍방 당사자의 교섭과정을 통하여 고객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약정 내용의 의미를 인식하고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양 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약관의 본질인 일방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 법에서 규제하려는 약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의 내용이 위 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그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조항의 작성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기회를 주었는지의 여부와 계약조항의 변경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8.12.16. 선고 97나50376 판결)